

★

문서번호	건강정책과-11906
결재일자	2015.8.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담 당	보건행정담당	건강정책과장	보건소장	
권미령	이종환	정종철	08/07 황원숙	
협 조				

보건소 구내식당 운영계획

2015. 8.



성 북 구
건강정책과

보건소 구내식당 운영계획

- ◇ 근무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으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
- ◇ 중식교대 시간에 쫓기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의 식사로 민원서비스 향상

I 구내식당의 필요성

- 중식 교대 시간 촉박으로 (직원들의) 편안한 식사를 하지 못함
 - 보건소 일 평균 방문 민원인 약 800여명
 - 직원들이 쫓기 듯 식사를 하며 중식시간 교대근무(근무환경 열악)
 - ☞ 편안한 분위기의 식사 환경 절실
- 근무환경을 개선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 도모
 - 여유롭고 편안한 식사 제공으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
 -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
 - ☞ 대민서비스 질 향상
- 들 끊는 구내식당 재개 여론
 - 구내식당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중단에 따라 운영폐지(2014.12.30.)
 - 인근식당을 이용하던 직원들의 구내식당 재개 여론 비등

II 추진 방향

- 예산지원 없는 자립 운영
 -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예산지원 없는 자립운영 추진
- 구내식당 민간위탁 계약
 - 전문업체 위탁 관리로 양질의 식사제공 및 위생관리(효율적 운영)
 - ※ 직영방식은 인건비 등 과중한 부담으로 운영 불가
- 위탁업체 선정 - 공개경쟁 입찰
 - 공개경쟁 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로 업체 선정

Ⅲ

위탁운영 계획

1. 추진 근거

- 성북구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(사용·수익허가)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)

2. 구내식당 현황

- 장 소 :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9층
- 시설규모 : 146.73㎡(홀 107.31㎡, 주방 24.09㎡)
- 좌 석 수 : 70좌석

3. 위탁운영 계획

- 운영 형식 : 급식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운영
- 업체 선정 : 공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수탁 희망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평가 후 선정
 - ※ 공개모집 시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
식당운영계획에 따른 공고내용을 기본으로 전문급식운영업체와 협의를 통한 수의계약
- 계약 기간 : 2015.10.01 ~ 2016.09.30.(1년)
위탁자(성북구보건소)와 운영업체 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가능
- 위탁운영 주요 조건
 - 급식요금 : 일식 4,500~4,800원(위탁자와 운영업체간 협의)
 - 급식시간 : 11:30 ~ 13:30 (매주 월~금요일)
 - ※ 공무원 비상근무, 보건소 행사시 업체와 사전협의
 - 식비계산 : 이용인원에 따른 월 정액제, 일일 식권(협의)
외부 내방객은 현금 판매
 - 식단 : 1식 4찬 기준
 - 한식위주의 양식 및 일품 병행한 자율배식 또는 부분대면배식
 - 중식 이외 간식 운영

□ 경비의 부담

- 위탁자 : 건물유지보수, 식당설비
 - 운영업체 : 가스사용료, 식재료비, 인건비(복리후생비 포함,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적용), 종사원 피복비, 교육훈련비, 설비·비품류의 소규모 수선 및 보충, 일상적 청소 및 관리운영 비용, 소모품비, 방역소독비, 1)연간 사용료
- ※ 별도 협의 : 전기, 수도요금

□ 위생·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사항

- 각종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-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업체는 화재·가스배상책임보험(대인, 대물)에 가입하여야 함
- 위탁급식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사항

4. 위탁업체 자격 및 업체선정 방법

□ 위탁운영 업체 참가자격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입찰자의 참가자격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요건을 갖춘 업체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)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단체급식 영업행위를 하면서 최근 3년 이내 2개 급식사업장에서 연간 45,000식 이상(일일 200식이상) 운영한 공공기관(학교, 군부대, 병원 제외) 또는 기타 실적이 있는 업체
- 식품위생법 제37조(영업허가 등) 및 동법시행령 제25조(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)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업체
- 제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
- 위탁업체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

1) 구내식당 운영의 필요성과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는 운영업체의 자율제시가격으로 산정코자 함(구청의 경우는 사용료 미 부과) / 구내식당 홀(107.31㎡)은 식사시간 이외, 프로그램 운영 예정

[위탁업체 제출서류]

- 입찰참가신청서
- 사업제안서 15부, (필요의 경우 USB 1매)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
-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
- 인감도장(사용인감)
-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
- 서약서 1부
-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(대리인일 경우)
- 국제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1부
- HACCP, ISO 인증 증빙서(해당시)

□ 위탁운영 업체 선정 평가 방법

○ 심사위원회 구성

- 사업제안서 평가 『성북구보건소 구내식당 위탁업체 심사위원회』 구성
 - 구성 : 보건소장, 보건소 부서장 4명, 이용부서별 직원 2명 외
 - 기능 :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심사 평가 결정

○ 심사방법

- 별도의 사업제안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사업제안서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우선순위 대상자 선정
- 최우선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대상업체로 선정
-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에 의함

○ 심사기준

- 심사항목 : 급식운영능력, 식단구성, 위생관리 및 고객서비스
-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및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
- 제안서 평가기준 중 급식비 평가는 하지 않으며, 정성적 평가로 대체

IV**향후 추진일정**

□ 입찰공고 : 2015.08.13.(목) 09:00 ~2015.08.26.(수) 17:00

○ 성북구청·성북구보건소 홈페이지, 나라장터

□ 사업제안서 접수

○ 날짜 : 2015.08.25.(화) ~ 2015.08.26.(수)09:00~17:00

○ 장소 : 성북구 보건소 8층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

○ 방법 : 직접 방문 제출(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)

□ 심사위원 심사평가 : 2015.09.03.(목) 예정

□ 위탁업체 선정발표 : 2015.09.07.(월)

□ 위탁계약 체결 : 2015.09.10.(목)

□ 주방설비 및 인수인계 : 2015.09.21.~09.30

□ 위탁운영 : 2015.10.01.~

※ 식당 종사자(인건비) : 2015년 성북구 생활임금(월1,495천원) 적용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

붙임 : 1. 성북구보건소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(안) 1부
2. 사업제안서 제출사항 설명서 및 첨부자료 1부